



의안번호	제 2019 - 2호
보 고 연 월 일	2019. 1. 14. (제92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123차 전체회의	1
1. 일시·장소	1
2. 참석자(11명)	1
3. 주요안건	1
II. 양형인자 추가 검토	2
1. 검토 배경	2
2. '심신미약' 관련 양형인자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	2
3.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의 양형인자 중 '합의' 또는 '피해 회복' 관련 양형 인자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	7
III. 명예훼손범죄의 집행유예기준 검토	10
1. 대유형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10
2. 대유형2 '모욕'	14
IV.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집행유예기준 검토	18
1. 요약	18
2.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집행유예 참작 사유	20
V.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집행유예기준 검토	22
1. 요약	22
2.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집행유예 참작 사유	24
VI. 향후 일정	29

【별첨】

- 송오섭, “명예훼손 범죄 양형기준 검토(집행유예 기준)”
 - 김찬중, 차호동, “명예훼손 범죄군 집행유예 기준 검토”
 - 전휴재, “유사수신행위범죄 양형기준 검토 4(집행유예)”
 - 김찬중, 차호동, “유사수신행위 집행유예 기준 검토”
 - 전휴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검토 3(양형인자)”
 - 김찬중, 차호동,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 검토Ⅲ(양형인자)”
 - 전휴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검토 4(집행유예)”
 - 김찬중, 차호동,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기준 검토”
 - 송오섭, “양형인자 추가 검토(심신미약)”
 - (참고자료), “합의 또는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
 - (참고자료), “전문위원 업무보고(2018. 12. 10. 제91차 회의)”
-

I. 제123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8. 12. 17.(월) 14:00~17: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1명)

- 수석전문위원, 권상진, 김찬중, 김혜경, 김희연, 범현, 송오섭, 전휴재, 차호동, 최준혁, 한상규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강수진, 이진국 전문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
- 간사 : 운영지원단장

3. 주요 안건

-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¹⁾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방안 검토
 - 심신미약 관련 양형인자 등 추가 검토
 - 집행유예 기준 검토

1) 이하 '유사수신행위법'으로 약칭함.

II. 양형인자 추가 검토

1. 검토 배경

- 양형위원회는 제91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범위반범죄의 양형인자 설정 방안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단의 추가 검토를 요청
 - ① 형법 제10조 제2항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심신미약’ 관련 양형인자의 설정 방안
 - ② 다른 범죄군의 양형기준 분석 등을 통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범위반범죄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의 적정성

2. ‘심신미약’ 관련 양형인자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

가. 진행 경과

- 전문위원단은 2018. 11. 12.과 26.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명예훼손범죄 등 6기 양형기준 설정 범죄의 양형인자에 ‘심신미약’을 포함할 것인지, 포함할 경우 그 질적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였고, 그 논의 결과는 제91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때 보고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의 경우 특별감경인자(행위자)로 반영하자는 데 대하여 전문위원들의 의견 일치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의 경우 다수 의견(9인)은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자는 입장이었고, 소수 의견(1인)은 감경인자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이었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이후인 2018. 11. 29. 국회 본회의에서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이던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변경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고, 개정 형법은 12. 18.부터 시행됨
 - ※ 입법 이유 : “형법상 책임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의안 원문)

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반영 방안²⁾

(1) 다수 의견(9인)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은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인과 비교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 이는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형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참작하여야 할 행위자적 요소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은 피고인과 같은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들어맞지 않음
- 최근 형법 개정을 통하여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사유에서 임의적 감경사유로 변경한 것은 주로 주취범죄에 대한 엄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위하여 법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취지일 뿐,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을 감경 요소에서 아예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님
- 심신미약이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을 특별감경인자에서 당연히 배제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양형기준의 체계적 정합성을 해침
 - 현행 양형기준에서는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의 하나인 '자수'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고, 제91차 양형위원회에서는 '자수'를 명예훼손범죄 중 대유형1(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유사수신행위 범위반범죄의 특별감경인자에 포함하기로 의결함
 - 현행 양형기준 상 개인적 범익에 관한 범죄 전부, 대부분의 국가적·사회적 범익에 관한 범죄에서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은 특별감경인자에 포함되어 있음
-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을 특별감경인자에서 배제할 경우 양형실무와 양형기준의 괴리로 인하여 양형기준의 규범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2) 소수 의견(2인) :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형법 제10조 제2항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6기 양형기준 설정 범죄 전부에 공통되는 사항임.

음)은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질적 구분을 변경하여 반영함이 타당함

다.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반영 방안

(1) 일반감경인자 포함 여부

(가) 명예훼손범죄

① 다수 의견(9인) : 일반감경인자에 포함

- 본인 책임 있는 심신미약의 경우에도 책임주의 원칙상 형의 감경 요소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안이 존재함
 - 우연 명정(酤酏)(예를 들어 ① 범행과 관계없이 치료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였다가 심신미약 상태가 초래된 경우, ② 사교적 모임에서의 음주 등 음주의 목적이 범행과 무관한 경우, ③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음주 명정상태에서 타인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명정에 빠진 데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 비난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이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일반감경인자로서 고려함이 타당함
 -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 범행의 경우 우연 명정 상태에서의 범행 사례가 적지 않음
- 현행 양형기준은 '심신미약'이라는 양형요소가 양형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서술식 기준을 두어 주취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음
 - 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만취 또는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하는 서술식 양형기준을 추가함(2018 양형기준 책자 29쪽 참조)

② 소수 의견(2인) : 일반감경인자에 불포함

- 형법 제10조 제2항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본인 책임 있는 심신

미약은 일반감경인자에 포함하지 않음이 타당함

- 특히 주취를 이유로 한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나)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범위반범죄

① 제1 의견(6인) : 일반감경인자에 불포함

- 침해되는 법익의 측면에서 현행 양형기준상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만을 특별감경인자에 포함하고 있는 범죄와 유사함. 따라서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을 일반감경인자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양형기준의 전체 체계상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공문서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근로기준법위반범죄,³⁾ 석유사업법위반범죄,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등의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만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구성요건적 행위의 특성상 우연 명정 상태에서의 범행을 상정하기 어려워 일반감경인자로 둘 실익이 거의 없음

② 제2 의견(5인) : 일반감경인자에 포함

-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나 전자금융거래범위반범죄도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 본인 책임 있는 심신미약도 책임주의 원칙상 일반감경인자로서 고려되도록 하여야 함

(2) 일반감경인자에 포함할 경우 서술식 양형기준의 추가 여부

(가) 명예훼손범죄

① 다수 의견(8인) : 서술식 양형기준 추가

- 양형기준의 전체 체계상 균형, 형법 개정 취지의 반영 등을 위하여 서술식 기준을 두어 본인 책임 있는 심신미약이 양형에 합리

3) 다만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은 본인 책임 유무에 관계 없이 모두 특별감경인자임

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

- 공무집행방해범죄, 개인적 범익에 관한 범죄(폭력범죄, 공갈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업무방해범죄, 손괴범죄 등)의 양형기준에서는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을 일반감경인자로 두면서 서술식 양형기준을 추가함
- 주취범행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와 형법 개정의 취지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음

○ 서술식 기준안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② 소수 의견(3인) : 서술식 양형기준 추가 불필요

- 일반감경인자이므로 서술식 양형기준이 없더라도 합리적인 양형에 방해가 되지 않음

(나)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범위반범죄

① 다수 의견(7인) : 서술식 양형기준 추가 불필요

② 소수 의견(4인) : 서술식 양형기준 추가

3.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의 양형인자 중 ‘합의’ 또는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

가. 진행 경과

-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에서는 2018. 7. 16. 제1차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합의 관련 양형인자의 통일적 규율을 위한 논의 진행
- 전문위원 제122차 전체회의에서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의 양형인자로서 ‘합의’ 또는 ‘피해 회복’ 관련 요소를 반영할 것인지, 반영할 경우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였고, 논의 결과는 제91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때 보고됨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 포함시키자는 데 대하여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일치. 다만 양형인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수신액을 기준으로 하자는 다수 의견(7인)과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자는 소수 의견(4인)으로 나뉨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일반감경인자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 포함하자는 제1 의견(6인)과 제외하자는 제2 의견(5인)으로 나뉨
- 운영지원단장은 제91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양형기준상 ‘합의’ 또는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의 설정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기초 보고

나. 특별감경인자 부분

(1) 다수 의견(9인) : 종전 보고안(‘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을 그대로 유지

-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제정 경위(법익보호의 조기화), 조문의 내용, 실무의 경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적 법익 역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통하여 보호되는 법익이라고 봄이 타당함 ⇒ 유사수신행위에 응한 투자자가 곧 범죄의 피해자에 해당함

- 개인적 법익도 보호법익으로 이해하는 이상 종전 보고안대로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라는 양형인자를 특별감경 인자로 유지함이 타당함

(2) 소수 의견(2인)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로 양형인자의 명칭을 변경

- 유사수신범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영업범을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더 강함. 개인적 법익이 강조된 '처벌불원'을 양형인자의 명칭에서 사용하지 않으면서 대안으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함
- 현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에서도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있음(2018 양형기준 책자 578쪽, 583쪽)
- 한편, 소수 의견은 '처벌불원' 양형요소의 처리방안에 관하여 ① 양형인자의 정의에 포함시키자는 견해(1인)와 ② 별도의 일반감경인자로 두자는 견해(1인)로 나뉨

※ 참고 사항

종전 보고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제91차 양형위원회 정기회의 때 보고된 양형인자의 정의에 관한 전문위원단의 의견은 아래와 같음

① 수신액을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

- 공소사실에는 유사수신 총액이 기재되고, 이 금액이 유사수신범죄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피해 회복 여부를 따지는 것이 적절함
- 유사수신 총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 피해액을 계산하는 것은 피해자가 다수인 범죄의 특성상 매우 어렵고, 유사수신범죄의 피해액이 환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도 어려움

- 양형인자의 정의

유사수신 총액을 기준으로 약 2/3 이상의 금액에 관해 투자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되거나 투자자의 피해가 회복 또는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

-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한 특성을 감안할 때, 수신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2/3 이상의 요건이 쉽게 충족될 여지가 있음
- 환급액을 공제한 실제 피해액을 기준으로 처벌 불원 여부를 가리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총 피해액을 기준으로 약 2/3 이상의 금액에 관해 투자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거나 투자자의 피해가 회복 또는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일반감경인자 부분

- 제91차 양형위원회에서 보고된 양형인자인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경우 ①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을 일반감경요소로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점, ② 양형기준상 동일한 용어('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가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과정에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일반감경인자로 둘 경우 명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견해가 나뉨
 - ① 다수 의견(8인) : 양형인자의 명칭을 '일부 피해 회복' 으로 변경
 - ② 제1 소수 의견(2인) : 양형인자의 명칭을 '상당 금액 공탁' 으로 변경
 - ③ 제2 소수 의견(1인) : 양형인자의 명칭을 종전 보고안대로 유지

III. 명예훼손범죄의 집행유예기준 검토

1. 대유형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가. 요약

(1) 제91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 • 전과가능성이 낮은 경우(2유형) •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균형법상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재논의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전과가능성이 낮은 경우(1유형)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재논의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제123차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집행유예 참작사유

※ 강조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순정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균형법)⁴⁾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u>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허위사실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전과가능성이 낮은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u>자수</u>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 범행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우발적 범행 ○ 상당 금액 공탁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명예훼손범죄의 피해자가 상관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 포함시키기로 한 점을 반영함. 다만 그중 죄질이 더 무거운 순정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한하여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됨.

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집행유예 참작 사유

(1)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 다수 의견(9인)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에 불포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다른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대부분 포섭됨. 그럼에도 별도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두게 되면 이중평가 등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의 정의규정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무작위) 범행'에 해당하거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규정 중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함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규정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대부분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평가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
- 이중평가 등의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대하여 집행유예기준 부분에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둘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규정과 집행유예기준의 정의규정이 달라지게 되어 양형기준 적용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큼

(나) 소수 의견(2인)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에 포함

- 명예훼손범죄 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

- 인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 또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명예훼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는 핵심적 지표이므로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고려함이 타당함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인식하기 어려움. 이를 별도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에 포함함으로써 양형기준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자수

(가) 다수 의견(10인)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에 포함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범행에 있어서 자수는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회복의 측면에서 집행유예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사유에 해당
- 자수가 특별감경인자로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

(나) 소수 의견(1인)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에 포함

-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자수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2. 대유형2 '모욕'

가. 요약

(1) 제91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재논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공연성이 없는 경우(균형법 제64조 제1항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 준상관인 경우(2 유형)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재논의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제123차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집행유예 참작사유

※ 강조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구분	부정적	긍정적
<p>주요 참작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u>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u> ○ <u>경찰관 등 공무집행 중 공무원에 대한 범행</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공연성이 없는 경우(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p>일반 참작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계획적 범행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u>피해자가 순정상관인 경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 범행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집행유예 참작 사유

(1)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 다수 의견(9인)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에서 제외

(나) 소수 의견(2인)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에 포함

☞ 각 의견의 논거는 명예훼손범죄 집행유예기준의 해당 부분 논거와 같음

(2) 경찰관 등 공무집행 중 공무원에 대한 범행

(가) 다수 의견(9인)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에 불포함

○ 지난 제91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찰관 등 공무집행 중 공무원에 대한 범행'을 양형인자(가중인자)에 포함하지 않기로 의결함. 양형인자에 포함되지 않은 양형요소를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법률상 가중의 근거가 없는 피해자(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범행을 집행유예기준에 있어서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함

○ 실무상 모욕의 상대방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이라는 사정만을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구체적 태양, 범행의 반복성 등을 모두 고려함

(나) 소수 의견(2인)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에 포함

○ 판결을 분석한 결과 모욕범죄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경찰관 등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이 많음. 양형기준은 양형실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하므로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3) 피해자가 순정상관인 경우

(가) 다수 의견(10인)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에 불포함

- 지난 제91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피해자가 순정상관인 경우'를 양형인자(가중인자)에 포함하지 않기로 의결함. 양형인자에 포함되지 않은 양형요소를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피해자가 준상관인 경우'는 일반감경인자에 포함하기로 의결되었지만 집행유예기준에서는 이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삼지 않아야 할 것임. 그러나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함. 그럼에도 양형인자에 포함되지도 않은 '피해자가 순정상관인 경우'를 집행유예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나) 소수 의견(1인)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에 포함

-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순정상관인 경우에는 집행유예에 있어서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고려하여 보다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IV.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 집행유예기준 검토

1. 요약

가. 제91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재논의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재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재논의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재논의 ○ 일반적 수사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123차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집행유예 참작사유

※ 강조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u>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가담 ○ <u>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u> ○ 자수 또는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u>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u>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u>일부 피해 회복</u> ○ 일반적 수사협조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집행유예 참작 사유

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의 적용 범위

(1) 제1 의견(6인) : 모든 유형에 적용

- 비조직적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과 단순 가담한 피고인 등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굳이 조직적 범행에 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2) 제2 의견(5인) : 2유형(조직적 범행)에 한하여 적용

- 비조직적 범행의 경우 범행가담자가 적어서 대부분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함. 1유형(비조직적 범행)까지 포함할 경우 1유형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지난 제91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2유형(조직적 범행)에 한하여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삼기로 함. 집행유예 기준에 있어서도 2유형에 한정하여야 양형인자와 균형을 이루게 됨

나.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의 적용 요건⁵⁾

(1) 다수 의견(9인) : 선택적으로 규정 ➡ ‘또는’

- 제91차 양형위원회에서는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두기로 의결함. 집행유예의 참작사유 부분에서도 양형인자에 관한 부분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5) 질적 구분에 관하여는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삼자는 데 의견이 일치함.

(2) 소수 의견(2인) : 양자를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 ➡ ‘및’

- 일반감경인자로 규정된 양형요소를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삼기로 하였으므로 수신액과 영업규모 모두가 매우 작은 경우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함이 타당

다.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부 피해 회복된 경우’

(1)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 다수 의견(9인)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라는 표현 사용

(나) 소수 의견(2인)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라는 표현 사용

(2)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 다수 의견(8인) : ‘일부 피해 회복 경우’라는 표현 사용

(나) 제1 소수 의견(2인) : ‘상당 금액 공탁’이라는 표현 사용

(다) 제2 소수 의견(1인)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라는 표현 사용

- ☞ 각 의견의 논거는 유사수신범위반범죄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에 대한 추가 검토 부분의 논거와 같음

V.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집행유예기준 검토

1. 요약

가. 제91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양형인자

※ 강조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u> ○ <u>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u>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u>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u> ○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가담 ○ <u>생계형 범죄</u> ○ <u>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u>
	행위 자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u>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u> ○ <u>반성 없음(범행의 단순부인은 제외)</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u>동종 전과(벌금 포함)</u>

나. 제123차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집행유예 참작사유

※ 강조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2유형 중 조직적 범행)</u> ○ <u>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u>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u>외국인으로서 불법체류기간 중인 경우</u> ○ <u>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u>단순 가담(2유형 중 조직적 범행)</u>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 중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u>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u>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u>피해 회복 노력 없음</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생계형 범죄</u>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일반적 수사협조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집행유예 참작 사유

가. 부정적 참작사유

(1)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의 적용 범위

(가) 다수 의견(7인) : 조직적 범행에 한정

(나) 소수 의견(4인) : 모든 유형에 적용

☞ 각 의견의 논거는 유사수신범위반범죄의 집행유예기준 중 해당 참작 사유에 대한 부분의 논거 참조

(2)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가) 전단 부분의 표현 방안

① 다수 의견(7인)⁶⁾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로 규정

② 소수 의견(4인) : '다량의 접근매체에 관한 장기간 또는 반복적 범행' 으로 규정

※ 참고 사항

제91차 양형위원회 정기회의 때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보고된 각 의견의 논거는 아래와 같음

①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로 규정하자는 견해

- ②항의 의견에 따를 경우 피고인이 한꺼번에 다량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를 포섭할 수 없는 문제점 발생

② '다량의 접근매체에 관한 장기간 또는 반복적 범행'으로 규정하자는 견해

- 다량의 접근매체에 관해 장기간·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결과 반가치가 크고 후속 범죄와의 연계성도 높아지므로 엄벌의 필요

6) 제122차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불참하였다가 제123차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참석한 범현 의원의 의견이 추가됨.

성이 인정됨. 그러나 1회에 다량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까지 반영해야 할 만큼 결과반가치가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움

(나) 전단과 후단을 별개의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규정할 것인지

① 다수 의견(8인)⁷⁾ : 하나의 참작사유로 규정

② 소수 의견(3인) : 별개의 참작사유로 규정

※ 참고 사항

제91차 양형위원회 정기회의 때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보고된 각 의견의 논거는 아래와 같음

① 하나의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 다량의 접근매체에 대하여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는 대부분 범죄로 인한 수익이 큰 경우로 귀결됨. 후자를 별개의 특별가중인자로 하면 특별가중의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뿐 아니라 이중평가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② 별개의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 다량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는 피해자의 측면에서,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는 행위자의 측면에서 각각 불법이 가중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규정함이 바람직함

(3) 외국인으로서 불법체류기간 중인 경우

(가) 다수 의견(8인)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에 불포함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적인 형을 가한다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음
- 외국인이 불법체류기간 중 범행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구금되어 있다가 실형 선고 여부와 상관없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본국으로 추방되므로 실익이 없음

7) 제122차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불참하였다가 제123차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참석한 범현 의원의 의견이 추가됨.

(나) 소수 의견(2인)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에 포함

- 출입국 관리 문제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의 도주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있음. 따라서 불법체류를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고려할 현실적인 필요가 존재함
- 출입국관리소의 보호시설 상황이 교도소나 구치소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경우가 많다는 현실도 고려하여야 함

(4)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가) 다수 의견(7인)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에 불포함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는 재산범죄로서의 성격이 거의 없어서 '범죄수익 은닉'의 경우 양형인자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전혀 없었음. 양형인자로 포함되지 않은 양형요소를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삼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함

(나) 소수 의견(3인)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에 포함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는 점조직을 이용해서 상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범죄수익 은닉을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사유로 고려할 필요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음

(5)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가) 다수 의견(8인)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에 포함

- 다른 범죄군의 집행유예기준에서는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에 포함하였으므로 이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함
- 양형인자에 관한 논의에서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일반가중인자에 포함하자는 데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므로 이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타당함

(나) 소수 의견(2인)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에 포함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는 매우 부정적인 가중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래 양형에서 저평가된 측면이 있음
-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사유로 고려할 필요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음

(6) 피해회복 노력 없음

(가) 다수 의견(8인)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에 불포함

- '피해회복 노력 없음'은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등 긍정적 참작사유로서 피해 회복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양형요소로 반영함이 타당. 피해 회복과 관련된 양형요소가 긍정적 참작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회복 노력 없음'만을 부정적 참작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그 자체만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고, 대부분 그 후속범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함. 그 경우에는 '후속범죄로 인한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가 집행유예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포섭될 여지가 큼. 이와 별도로 '피해회복 노력 없음'을 부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한다면 후속범죄 유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처벌이 다르게 되는 문제가 생길 우려 있음

(나) 소수 의견(2인)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에 포함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는 보이스피싱 등 재산범죄와 연결되어 있고, 그에 대한 수사도 실제 대부분 경제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의 고소·고발에 의해서 개시되므로 실질적으로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해당함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으로 이해하게 됨.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라도 반영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음

나. 긍정적 참작사유

(1) 단순 가담⁸⁾

(가) 제1 의견(6인) : 조직적 범행에 한정하여 적용

(나) 제2 의견(5인) : 모든 유형에 적용

※ 참고 사항

제91차 양형위원회 정기회의 때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보고된 각 의견의 논거는 아래와 같음

① 조직적 범행에 한정

- 조직적 범행에서 주로 문제되므로 2유형에 한정하여 적용함이 타당

② 모든 유형에 적용

- 비조직적 범행에 있어서도 가담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행위불법의 차이는 양형에 합리적으로 반영함이 타당

(2) 생계형범죄

(가) 다수 의견(8인)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에 포함

(나) 소수 의견(2인)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에 불포함

※ 참고 사항

제91차 양형위원회 정기회의 때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보고된 각 의견의 논거는 아래와 같음

① 포함하자는 견해

-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를 고려

8) 질적 구분에 관하여는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삼자는 데 의견이 일치함.

함이 적절함. 다만 다른 범죄군의 양형기준에서도 주로 일반감경
인자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가중인자 중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 대응함

② 불포함하자는 견해

-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하부 말단에 있는 피고인은
특히 생계를 위해서 범행을 저지름. 이를 감경요소로 고려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해서 거의 감경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VI. 향후 일정

- 안건 : 6기 설정범죄(명예훼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
에관한법률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방안(공청회, 관계기관 의견
조회 결과) 검토
- 일시 : 2019. 2. 18.(월) 15:00~
- 장소 : 대법원 404호